**◇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을 조성하고,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 및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양봉농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밀원식물의 범위,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사업의 내용 및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밀원식물의 범위(안 제2조)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범위를 개양귀비·꿀풀 등의 초본식물, 동백나무·두릅 등의 목본식물 및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로 정함.

나.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안 제4조)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원원종(原原種)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다.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및 절차(안 제5조 및 별표)

1) 양봉농가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일정한 꿀벌의 사육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등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을 정함.

2)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에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고 시

## ◉국방부고시제2020-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은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포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주둔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42-1번지 1필지 3,63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계 | | 1필지 | | 3,638 | 3,638 | 3,638 | | | 1명 | | 1명 |
| 1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 산242-1 | 임야 | 3,638 | 3,638 | 잡종지 | 농림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나무배기길 ** | 이**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0 (신읍동) | 포천시 산림조합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고시제2020-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고시제2020-20호(관보제19780호, 2020. 7. 24.)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훈련장 기동로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 00훈련장 전차 기동로 신설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부대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97-4번지 등 44필지 17,113.1㎡

○ 변경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97-4번지 등 44필지 16,947.1㎡

○ 사유 : 지적측량(분할) 결과에 따른 일부 토지의 세목(지번 및 면적) 변경과 당초 고시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亡者)의 상속권자 등 관계인 추가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2020. 6. 25.)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57